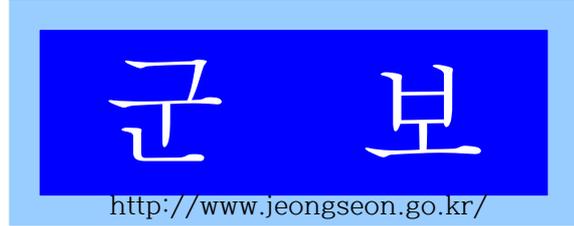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515호 2020. 2. 5. (수)

【고 시】

- 정선군 고시 제2020-23호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2차] 고시.....2

【공 고】

- 정선군 공고 제2020-109호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4
- 정선군 공고 제2020-112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면허계획 공고.....25
- 정선군 공고 제2020-115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공람·공고.....27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고 시

정선군 고시 제2020-23호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시행계획 [2차] 고시

농촌 중심지의 중심거점공간을 육성하고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2차]을 수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월 22일

정 선 군 수

- 1. 사업의 명칭 : 북평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 2. 사업의 목적
 - 북평면 중심지 거점공간을 육성하고 마을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역량 및 마을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 삶을 질 향상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 3. 사업의 내용 및 구역
 - 사업구역 : 강원도 정선군 북평면 북평리 외 배후마을 일원
 -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복지회관 리모델링, 주차장 조성, 북평 문화광장
 - 금회 승인 : 북평 문화쉼터 조성 4,025㎡

- 지역 경 관 개 선 : 명품테마거리, 근대문화거리 조성
- 지역 역 량 강 화 : 주민교육 및 홍보·마케팅, 부대비용 등

4. 사 업 비 : 6,125백만원(국비 3,938, 지방비 2,187)

○ 금 회 승 인 : 1,825백만원(문화쉼터 1,063백만원, 체경비 762백만원)

5. 사업기간 : 승인일로부터 2021.12.31.까지

6.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7. 위(수)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사

※ 기타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시과에 비치된 시행계획서 열람 가능
(도시과 도시개발 ☎033-560-2464)

공 고

정선군 공고 제2020-109호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정선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0년 1월 22일

정 선 군 수

1.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정선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로 변경
- 재활용품 수거를 위한 지급안 마련
 -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장려금 지급안 마련(안 제6조의2)
-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마련
 -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리체계 정비 및 적정 처리를 위한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규정 신설 (안 제8조의3)
-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
 - 과태료 부과 규정 정비 (안 제8조의2, 안 제9조제2항, 안 제21조의2)

3. 개정 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 : 2020. 1. 23. ~ 2020. 2. 12.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12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선군수(참조: 환경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정선군청 환경과

- 연락처 : 전화(033-560-2359), 팩스(033-560-2589)
- 주 소 : (23161)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정선군청 환경과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직접방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개정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정선군 조례 제 호

정선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정선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정선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를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을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영”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재활용장려금) ①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제2호 중 “시행규칙”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직접 운반하거나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의 관리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제2항 중 “이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를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9조 제2항 중 “대한 과태료 부과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은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의4를 따른다.

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정선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p>	<p>정선군 폐기물 관리 조례</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폐기물관리법」,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가정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 을 말한다.</p> <p>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 폐기물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계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p> <p>3~7. (생략)</p> <p><u><신 설></u></p>	<p>제 2 조 (정 의) ----- -----.</p> <p>1.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다 .)----- ----- -----.</p> <p>2.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 ----- -----.</p> <p>3.~7. (현행과 같음)</p> <p>8. <u>“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u> <u>·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u> <u>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 ~ ③. (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u>시행규칙</u>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 설></p> <p>제8조의2(사업장폐기물의 관리) ① (생 략) ② 군수는 제1항에 의거 검사한 결과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거 <u>이 조례시행규칙</u>에서 정한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p>	<p>제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등의 대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p> <p>제6조의2(재활용장려금) ①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u>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하여는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p> <p>제8조의2(사업장폐기물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u></p>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제8조의3(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는 자에게 직접 운반하거나 운반하게 할 수 있다.</p> <p>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건설폐기물의 관리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p> <p>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8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p> <p>① (생 략)</p> <p>②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u>대한 과태료</u> <u>부과는 규칙으로 정한다.</u></p> <p>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u>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17</u> <u>조제1항 각호에 해 당하는 특별관리지역</u> <u>에서의 폐기물 불법투기행위자에 대한</u> <u>과태료를 일반관리지역과 구분하여 부</u> <u>과할 수 있다.</u></p> <p><신 설></p>	<p>제9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대하여 과태료</u> <u>를 부과할 수 있다.</u></p> <p>③ <삭 제></p> <p>제21조의2(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 부과 기준은 법 제68조 및 법 시행령 제38조 의4를 따른다.</p> <p>②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p>

[별표 8] <신설 2020. . .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1.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임시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처리자 등을 기재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2)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장소 또는 처리업소에 운반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2호, 제3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 받은 자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에 인계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4)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받거나 반입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지정받은 보관장소로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보관장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기재한다.

(3)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의 폐기물 반입내역을 확인한다.

나.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다.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은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생활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마.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장소로 지정 받은 자는 반입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폐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그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보관·처리하여야 한다.

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공사장생활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공사장생활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가.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 및 처리업소는 인계서(별지 제1호서식) 및 관리대장(별지 제2호, 제3호서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뒤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장소에 보관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 보관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관할 시·군·구청 : 관할 시·군·구청 명을 기재

다. ③, ④, ⑤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라. ⑥ 차량번호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마. ⑦ 운반일자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바. ⑧ 운반장소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사. ⑨ 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아. ⑩ 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양을 kg 단위로 기재

자. ⑪, ⑫, ⑬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상호, 허가번호 및 소재지를 기재

차. ⑭, ⑯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카. ⑮, ⑰ : 해당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기재

타. ⑱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 작성요령 >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⑥ (생략)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③국가는 지정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상황을 파악하고 지정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국가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기술을 연구·개발·지원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간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

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 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6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5. 7. 20., 2017. 4. 18.>

- 1.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자(제65조제1호와 제66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1의2. 제15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 1의3. 제1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1의4. 제17조의3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의5.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 1의6. 제18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 1의7. 제18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 2. 삭제 <2015. 1. 20.>
- 3. 제25조 제9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3의2.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고 등록된 사항을 변경한 자
- 3의3. 제25조의2 제8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제66조제9호의4의 경우는 제외한다)
- 4.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거나 오염물질 및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또는 조사하지 아니한 자(제66조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5. 제34조 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고 기술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 6. 제38조 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자만 해당한다)

- 6의2.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7. 삭제 <2010. 7. 23.>
- 8. 제40조 제8항에 따른 계약갱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 제13조의5 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성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재활용한 제품 또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유통한 자
- 10. 제46조 제7항에 따른 처리금지 기간 중 폐기물의 처리를 계속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 1.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 1의2.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 1의3. 제17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 2. 제17조 제7항에 따라 고시한 지침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삭제 <2015. 7. 20.>
- 4. 삭제 <2010. 7. 23.>
- 5. 제17조 제2항, 제25조 제11항, 제29조 제3항 또는 제46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한 자
- 6.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자
- 7. 제19조 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 8. 삭제 <2007. 8. 3.>
- 9. 제3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전부 처리하지 아니한 자
- 9의2.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만 해당한다)
- 9의3. 제38조 제3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제1항제6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9의4. 제38조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10. 제40조 제7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 11. 제46조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12. 제14조 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자
- 12의2. 제18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중요사항이 변경된 후에도 유해성 정보자료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을 의뢰받은 전문기관을 포함한다)
- 12의3. 제18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작성한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자
- 12의4. 제18조의2 제4항을 위반하여 유해성 정보자료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 1.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 2. 제8조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3.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 4.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조례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 4의2. 제15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4의3. 제18조 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자
- 5. 제29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설의 사용을 시작한 자
- 6. 제35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7. 제36조 제1항에 따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 7의2. 제36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재활용 제품 또는 물질에 관한 내용을 기간 내에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자
- 8. 제3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제2항제9호의2의 경우는 제외한다)
- 9. 제38조 제4항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10. 제39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11. 제39조 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12. 제40조 제9항에 따른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 13. 제40조 제10항에 따른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 14.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2. 6. 1., 2013. 7. 16.>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1. 4. 6.]

[제38조의3에서 이동 <2013. 12. 30.>]

□.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정선군 공고 제2020-112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면허계획 공고

정선군 공고 제2020-111호(2020년 정선아리랑열차 연계형 정선시티투어 버스임차용역)와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의 2에 따라 정선 시티투어버스 운영을 위한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9일

정 선 군 수

- 1. 사업종류 :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한정면허)
- 2. 사 업 명 : 2020 정선아리랑열차 연계형 시티투어버스
- 3. 공고기간 : 2020. 1. 29. ~ 2020. 2. 4.
- 4. 신청 접수기간 : 2020. 2. 5. ~ 2020. 2. 7.(3일간)
- 5. 한정면허 내용

가. 운행구역

노선명	운행코스
아리랑열차 연계형 노선	하이캐슬리조트(11:10) ⇨ 마운틴콘도(11:20) ⇨ 컨벤션호텔(11:30) ⇨ 민동산역(11:40) ⇨ 정선역(12:20) ⇨ 정선5일장 ⇨ 스카이워크·아라리촌 ⇨ (선택관광) 덕우리체험마을 or 화암동굴 or 화암약수소금강길 ⇨ 정선역(17:25) ⇨ 민동산역(18:05) ⇨ 하이캐슬리조트 ⇨ 컨벤션호텔 ⇨ 마운틴콘도

나. 운행대수 : 1대

다. 서비스의 수준 : 시티투어 탑승자의 안전을 최선으로 하고, 친절 운행

라. 면허기간

- 아리랑열차 연계형 노선 : 2020.3.1. ~ 2020.12.31.

마. 보조금의 지급 : 책정된 1회 버스임차비 이외의 지급은 없음

바. 한정면허 신청자격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면허기준 요건을 갖춘 자

6. 구비서류(제출서류)

- 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1부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별지6)
- 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다. 사업계획서 1부
- 라.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 마.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바.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각 1부

7. 사업자 선정 절차

- 정선군 공고문-111호(2020년 정선아리랑열차 연계형 정선시티투어 버스임차용역)에 따라 낙찰예정자 우선순위에 따라 한정면허 서류심사 후 면허 발급

8. 접수처 : 정선군청 안전과 교통행정팀 (033-560-2366)

※ 직접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9. 기타 유의사항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교체 또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때에는 면허취소와 함께 형사고발 할 수 있음
- 나.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국토교통부 각 지침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함
- 다. 정선시티투어 버스임차용역 과업지시서에 의함
- 라.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정선군청 교통행정팀(560-2366)으로 확인하시기바랍니다.

정선군 공고 제2020-115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2월 3일

정 선 군 수

- 1. 공람목적 :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 2.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744-3번지
- 3. 공람개요 : 군계획시설(소공원) 1개소 신설 (1,382.8㎡)
- 4. 정선 군관리계획(시설:공원)결정(변경)(안) 도서 : 게재 생략(공람장소 비치)
- 5. 관련도서 비치 및 열람 장소 : 정선군 도시과, 정선읍사무소
- 6.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2020. 2. 03. ~ 2020. 2. 18.)
- 7. 의견제출 방법 및 장소 : 열람 기간 내 정선군 도시과 및 정선읍사무소에 서면 제출
- 8.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정선군 도시과 (033-560-21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공람·공고(안)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